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91 호
----------	---------

제출년월일 : 1999.11.1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실 납세표창자의 자동차 주차시 주차요금 면제(안 제4조제5호)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안 조정(안 제7조)

다.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 삭제 및 설치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및 구조,설비기준 조항 삭제(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단순화 21개 종류 → 7개 종류](안 별표5)

바. 과징금 처분조항 삭제(안 제17조)

사.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 신설(안 제18조의 2)

3. 참고 사항 :

○주차장법 개정(법률 제5902호, '99.2.8)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4.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99-196호('99. 9. 14)

5.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2호중“법제12조제2항”을“법제12조제1항”으로“법제19조의3”을 “법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2항본문중 “법제9조의1”을 “법제9조제1항”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실납세표창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서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

제7조제1항제2호중 “법인 또는 개인”을 “법인,비영리법인,사회단체또는개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균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균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단위로선납
기타의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입찰가격 또는 수의계약금액	입찰 또는계약시 정하는방법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하며”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3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10”을 “별표5”로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중“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별표9)와 같다”를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견진술) ①제18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2」 하단 =비고= [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재 료	색 체	
		바 탕	글씨(고딕)
노상 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회 색

「별표5」 및 「별표7」 및 「별표8」 을 삭제한다

「별표9」 를 「별표7」 로 하고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10」 을 「별표5」 로 하고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② <생략></p> <p>1.<생략></p> <p>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이외의 자가 <u>법제12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u>법제19조의 3의 규정</u>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u>별표1</u>”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u>법제15조제2항의 규정</u>에 의거 당해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u>법제9조의 1의 규정</u>에 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u>법제9조제3항의 규정</u>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p> <p>1~4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생략></p> <p>1~4 <생략></p> <p><신설></p>	<p>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② <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 ----- ----- <u>법제12조제1항</u> ----- ----- <u>법제19조제2항</u> ----- -----</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u>별표1</u>”과 같다</p> <p>② ----- ----- ----- <u>법제9조제1항</u> ----- ----- -----</p> <p>1~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현행과 같음> ></p> <p>1~4 <현행과 같음></p> <p>5.성실납세표창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서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p>

현행				개정안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1. <생략>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u>법인 또는 개인</u>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u>			
②<표>				②<표>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사용료 또는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적인 방법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사용료 또는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사용료 또는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기타의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입찰가격 또는 수의계약 금액	입찰 또는 계약시 정하는 방법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삭제> ②<삭제> ----- ----- ----- ③<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5”의 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징에 따라 정할수 있다</p> <p>②주차구획이 1대당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수 있다.</p>	<p>제10조 <삭제></p>
<p>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 영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p> <p>1~4<생략></p>	<p>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 영제3조의2 ----- ----- ----- ----- -----</p> <p>1~4<현행과 같음></p>
<p>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p> <p>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준농림지역 ----- ----- ----- ----- -----</p> <p>②----- ----- ----- “별표 5”와 같다</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시설물관리에 지장을 초</p>	<p>제15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래하지않은 범위안에서 제공할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규모는 다음과 같다.</p> <p>1~6 <생략></p> <p>제16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총설치 대수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한다.</p> <p>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미터)</p> <table border="1" data-bbox="194 1170 821 1421"> <thead> <tr> <th>주차형식</th> <th>차로의 너비</th> </tr> </thead> <tbody> <tr> <td>평행주차</td> <td>3.0</td> </tr> <tr> <td>직각주차</td> <td>6.0</td> </tr> <tr> <td>60도대향주차</td> <td>4.0</td> </tr> <tr> <td>45도대향주차</td> <td>3.5</td> </tr> <tr> <td>교차주차</td> <td>3.5</td> </tr> </tbody> </table> <p>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때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p>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	직각주차	6.0	60도대향주차	4.0	45도대향주차	3.5	교차주차	3.5	<p>제16조 <삭제></p>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												
직각주차	6.0												
60도대향주차	4.0												
45도대향주차	3.5												
교차주차	3.5												

현 행	개 정 안
<p>6미터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p> <p>3. 주차대수 4대이하의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수 있다.</p> <p>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5.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 또는 곡선부분의 구분없이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7조(과징금 처분) ①영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군수가 법 제2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장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③군수는 납부가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정</p>	<p>제17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8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p> <p><신설></p>	<p>제18조(과태료처분) -----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p> <p>제18조의2(의견진술) ① 제18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p>

과태료부과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자	50
2.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0
3. 기계식 주차장치의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0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50

※ 비고 :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부과할 수 있다.

[별표5]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m ² 초과 200m ²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 ² 당 1대
6.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비 고: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